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4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무과), 02-970-6028

제정	2012. 3. 1.	개정 2013. 4.1	9. 개정	2013. 10. 31.
개정	2014. 7. 7.	개정 2016. 7.	5.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2. 22.	개정 2020. 12. 3	30.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11. 1	15. 개정	2023. 5. 1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성과급적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대상) 교원 업적평가 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이하 "본교"로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평가 주기 및 대상기간) ① 교원 업적평가는 1년 단위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업적 평가는 3년 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 ② 업적평가기준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평가완료 기한은 매년 5월 말일로 하다.

제4조(평가의 영역과 정의) 교원 업적평가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업적평가
- 2. 전공과 관련된 연구와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업적평가
- 3.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내·외에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 업적평가

제2장 교원 업적평가방법

제5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학문의 유사성과 업적의 성격 및 유형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계열별 유사 전공으로 나누어 설정하되 단위별 최소인 원은 20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평가단위는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0. 12. 30.)
- ④ (삭제 2020. 12. 30.)
- ⑤ (삭제 2020. 12. 30.)
- 제5조의2(평가단위 조정) ① 평가단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업적 평가계열 조정 신청서에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성과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 ② 단과대학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단위(계열) 변경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무처를 경유하여 평가단위(계열) 조정을 신 청한 교원이 속한 평가단위(계열) 업적평가위원회와 조정하고자 하는 평가단 위(계열) 업적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 ③ 평가단위(계열) 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평가단위(계열) 업적평가위

원회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성과 등 심의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교원의 전 공과 조정하고자 하는 평가단위(계열)와의 학문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를 경유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30.)

- ④ 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성과와 평가단위(계열) 업적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단위(계열) 조정 승인 여부를 결 정한다. (신설 2020. 12. 30.)
- ⑤ 평가단위 조정이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평가단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30., 개정 2021. 12. 30.)
- ⑥ 평가단위 조정의 신청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평가단위 조정의 승인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단위 조정의 승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2. 30.)
- 1. 신규 임용 이후 신설된 평가단위로 조정하는 경우
- 2. 신규 임용 이후 신설된 평가단위로 조정한 후 다시 종전의 평가단위로 변경하는 경우
- ⑦ 평가단위 조정을 신청한 교원은 평가단위(계열) 업적평가위원회 및 업적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개정 2021. 12. 30.)
- 제6조(평가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비율) ① 교원 업적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7)
 - □ (삭제 2017. 11. 1.)
 - □ 2015년 이후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비율

등 급	SS	S	Α	В	С	합계
성과연봉 인원비율	5%	10%	35%	45%	5%	
성과연봉 지급액 비율	2.00β	1.50β	1.20β	β이하 자율결정	0.00β	100%

- * 각 등급의 인원 비율은 $\pm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 β : 성과연봉 기준액
- ② 교원 업적평가는 계열별 정년보장교원와 비정년교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③ SS등급 적용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 ④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1. (삭제 2017. 11. 1.)
- 2. SS등급 인원은 SS기준 점수 이상인 자로 하되, 인원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5% 이내로 배정(SS기준점수 : 계열별 연구 평균점수에 계열별 연구점수 표준편차의 3배를 더한 값)
- 3. S, A, B등급 인원 배정 기준
- 가. 정수 인원을 우선 배정
- 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 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⑤ 성과연봉 최하위C등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신임교원 평가 및 지급방법) ① 신임교원의 최초 업적평가 시에는 해당 신임교원이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업적평가를 실시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 ② 평가단위 내 대상 교원이 1명일 경우, 성과연봉기준액을 지급한다.
- ③ 2학기에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1학기에 신규 임용된 교원과 업적 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 ④ 총장은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연봉 계약 체결 전에 성과급적 연봉 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계약을 체결한다.

- 제8조(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교원 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반영비율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2. 11. 15.)
- ② (삭제 2021. 12. 30.)
- ③ (삭제 2021. 12. 30.)
- ④ 교원 업적평가 내용 및 평가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1. 12. 30.)
- ⑤ 교원 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표는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21. 12. 30.)

제3장 교원 업적평가 기구와 절차

- 제9조(업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업적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교수로 구성한다.
- ② 업적평가위원회 이외에 별표 1에 따른 평가단위(계열)별 업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위(계열)별 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
- ③ 업적평가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 정 2017. 11. 1.)
- 제10조(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
- 1. 교원 업적평가 기준과 평가단위에 관한 사항
- 2. 교원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요청에 관한 사항
- 3.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원 업적평가와 관련한 건의사항
-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1. 1.)

- ③ 업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 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
- 제11조(교원업적평가 절차) ① 교원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업적평가 자료를 전 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익년도 3월 15일까지 교무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완료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 ②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는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최종 확정하다.
- ③ 총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등급을 교원 개인별로 통보한다.
- 제12조(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교원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등 본인 과실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
- ② 총장은 이의신청한 교원의 소명자료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 제13조(평가 관련 자료의 제공) 교원 업적평가 항목을 관리하는 부서는 교무처에서 요청 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의 예외 적용) ①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연구년, 파견,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교육영역업적을 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대상기간 시작일의 전날을 기점으로 직전 3년간 평균 점수의 80퍼센트(출산휴가의 경우 100퍼센트)를 인정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가 가능한 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를 100퍼센트 인정하고, 평가할 수 없는

- 학기에 대하여만 평가대상기간 전날을 기점으로 직전 3년간 평균점수의 80 퍼센트(출산휴가의 경우 100퍼센트)를 인정한다.(개정 2014. 7. 7.)
- ② 신규 임용자의 경우 모든 업적은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③ 2학기 신규 임용된 교원의 교육영역 평가점수는 2학기 교육영역 점수를 당해연도 교육영역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개정 2014. 7. 7.)
- ④ 신규 임용 3차 연도 업적평가에 해당하는 교원의 연구영역 점수는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정하되,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연구영역 평가점수 계산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3. 5. 10.)
- 제15조(대학의 장 성과연봉 등급) 대학의 장이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 이후 최초 업적평가와 다음 연도 업적평가 시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내에서 A등급을 부여하며, 업적점수에 의한 등급이 A등급보다 상위등급인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으로 한다.

제4장 교원 업적평가결과의 활용 등

- 제1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교원의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교원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의 업적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성과연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지급한다.
 - ② 성과연봉은 기본연봉과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③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 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다.

- ④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 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하며, 초과 책정이 필요한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7조(성과연봉 지급 제외 및 성과등급 조정)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공무상 병가·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 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전년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의 차년도 일부 가산액)의 1인당 평균액을 지급한다.
-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성과 급적연봉제 등급부여 및 우수교수 선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교원 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평가결과의 비공개) 교원 업적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제12호, 201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 12. 31. 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 12. 31.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2. 12. 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시행하며, 2011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 칙(제194호, 2013. 4.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6호, 2013. 10.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0호, 2014,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31호, 2016. 7.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및 별표 3-1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6호, 2017.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 규정개정은 2018년 평가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1호, 2018. 2. 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별표3-1 제2호 연구업적평가표 중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SCOPUS 저널'의 평가항목 인정 기준은 발행일자 2017. 3. 1. 논문부터 적용하다.
 - ② 별표3-1 제2호 연구업적평가표 중 '창업'의 평가항목은 2017. 1. 1. 이후 설립 완료되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부터 적용한다.
 - ③ 별표3-1 제3호 봉사업적평가표 개정규정은 2018. 3. 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73호, 2020. 12. 30., 2021.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제1호 교육업적평가표 중 '휴·보강 관리', '성적평가 및 보조전표 등재'는 2022년 (2021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 제2조(평가단위 조정의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 년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업적 평가계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60호, 2021.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제3호 봉사업적평가표 중 '기초·교양교과 책임교수', '혁신공유대학사업', '각종 기획·정책연구 등 T/F위원', '특화산업 기업협업센터장' 평가항목은 2023년(2022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20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교원 업적 평가단위'와 별표 3-1의 제1호 '교육업적평가표' 중 '장의개선보고서 제출 교과목수', 별표 3-1의 제2호 '연구업적평가표' 중 '창업', 별표 3-1의 제3호 '봉사업적평가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2022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설립된 기업으로서 종전의 규정([별표 3-1] 중 2. 연구업적평가표의 '교원창업')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내 설립 완료되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제4조(교육업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평가대상기간 내 공학교육 역신센터 주관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수법 개발 사례를 발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별표 3-1] 중 1. 교육업적평가표의 '강의 질개선 노력', '교수법 개발사례 발표')을 따른다.

부 칙(제745호, 2023. 5.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2. 30., 2021. 12. 30., 2022. 11. 15.)

교원 업적 평가단위

평: 번호	가단위(계열) 명칭	학과(전공) 및 부서명	비고
1	생산공학 계열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설계자동학공학프로그램,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프로그램, 자동차프로그램) 신소재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 ITM전공) MSDE학과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및 철도안전공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2	정보통신 계열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전기·신호공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공학) 융합과학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3	건축건설 계열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건설공학과)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 및 철도경영정책과(건축건설 전공)	
4	화공화학 계열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및 에너지화학공학과	
5	물리수학스포츠 계열	스포츠과학과 안경광학과 자연과학부(수학 및 물리학전공)	
6	설계디자인 계열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건축설계)	-기계디자인금형 공학프로그램 산업디자인 전공자 포함
7	조형예술 계열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IT디자인융합전공	

평:	가단위(계열)	학과(전공) 및 부서명	비고
번호	명칭	리카(한6) 및 구시경	기포
8	인문사회창작 계열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인문사회교양학부 및 융합교양학부(인문 계열) 국제교류처	- 사회학, 교육학,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전공 포함
9	경영행정 계열	경영학과(경영학 전공, 글로벌테크노경영 전공) 행정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AI공공정책전공 및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공학 외) 공대소속 경영/경제(행정 계열전공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건축건설전공 외)	 경제학, 정책학, 언론정책학, 법학 등 포함
10	소프트웨어 계열	<삭 제>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포함
11	산학협력중점 계열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전임 교원 포함

※ 비고

- 1. 교원의 업적 평가단위(계열)는 소속 학과(전공)를 원칙으로 함. 다만, 임용단계에서 소속 학과(전 공)와 임용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문적합성을 판단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산학협력중점계열 교원은 소속 학과(전공) 등을 기초로 학문적합성을 판단하여 별표 3-1의 '2.1 학술연구' 업적평가를 위한 부계열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21. 12. 30.)

[별표 2-1] (개정 2013. 4. 19., 2013. 10. 31., 2020. 12. 30., 2023. 5. 10.) <2017년(2016 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교원 업적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1.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방법

가.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평가	cal cal	평가 유형							
おか	84	표준형 (1~10계열)	산학협력중점 (11계열)						
卫	육	45%	30%						
연구	학술연구	45%	10%						
[연구	산학협력	45%	50%						
봉	사	10%	10%						
합	·계	100%	100%						

나. 영역별 평가점수

- 1) 표준형 (1~10계열)
 - 가) 교육영역 점수(100점 만점) : 교육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 ※ 교육영역 점수 = 학기당 총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하여 평균 + 가산우대점
 - 나) 연구영역 점수(100점 만점) : 연구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 ** 연구영역 점수 = (연구업적 점수 ÷ 계열 상위 5%에 해당하는 교원의 연구업적 점수) × 60 + 40점
 - ※ 상위 5% 이내 교원은 모두 상위 5% 해당 점수로 봄
 - ※ SS등급자의 연구점수는 연구영역 점수 산출에서 제외
 - * 연구영역은 학술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으로 구성
 - ※ 신임교원 임용 3차연도 업적평가 점수 = 재직기간 연구실적 점수 × 36 / 재직기간(월)
 - 월 15일 이상 재직시 1개월로 산정
 - 다) 봉사영역 점수(100점 만점) : 봉사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 ※ 교외(총 봉사점수의 최대 30%) + 교내(총 봉사점수의 최대 70%) + 가산우대점
- 2) 산학합력중점 (11계열)
- 가) 교육영역 점수(100점 만점): 교육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 ※ 교육영역 점수 = 학기당 총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하여 평균 + 가산우대점
- 나) 학술연구영역 점수(100점 만점, 11계열) : 연구업적평가표의 "2.1 학술연구 업적" 표에서 11계열 교원이 선택한 부계열에 따라 평가
- ** 학술연구영역 점수 = (학술연구업적 점수 / 계열 상위 5%에 해당하는 교원의 학술연구 업적 점수) × 60 + 40점
- ※ 상위 5% 이내 교원은 모두 상위 5% 해당 점수로 봄
- ※ SS등급자의 연구점수는 연구영역 점수 산출에서 제외

- ※ 신임교원 임용 3차연도 업적평가 점수 = 재직기간 연구실적 점수 × 36 / 재직기간(월)- 월 15일 이상 재직시 1개월로 산정
- 다) 산학협력영역 점수(100점 만점, 11계열) : 연구업적평가표의 "2.2 산학협력 업적" 에 따라 평가
- ※ 산학협력영역 점수 = (산학협력업적 점수 / 계열 상위 5%에 해당하는 교원의 산학협력 업적 점수) × 60 + 40점
- ※ 상위 5% 이내 교원은 모두 상위 5% 해당 점수로 봄
- ※ SS등급자의 연구점수는 연구영역 점수 산출에서 제외
- 라) 봉사영역 점수(100점 만점) : 봉사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 ※ 교외(총 봉사점수의 최대 30%) + 교내(총 봉사점수의 최대 70%) + 가산우대점
- 다. 업적평가 종합점수 계산방법
- 1) 표준형 (1~10계열) : (교육영역 점수 × 0.45) + (연구영역 점수 × 0.45) + (봉사영역 점수 × 0.10)
- 2) 산학협력중점 (11계열) : (교육영역 점수 × 0.30) + (학술연구영역 점수 × 0.10) + (산학협력영역 점수 × 0.50) + (봉사영역 점수 × 0.10)

2.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적용 방법

- 가. 논문, 특허, 우수학술대회 발표 논문(소프트웨어 계열)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2/(n+1)
- 공동저자 : 1/(n+1)
- ※ 온라인 출판 논문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 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나. 저서, 창작(설계), 학술회의발표 : (1/n)
- 다. 교외연구비
- 책임연구원 : 2/(n+1)
- 공동연구원 : 1/(n+1)
- 라. 인정 환산율 적용 시 학생(석·박사 포함) 연구원도 n값에 포함한다. 다만, 연구비의 n값은 책임연구원 수와 공동연구원 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 마. ① "주저자"라 함은 해당 논문 등의 저자로서 제일 먼저 성명이 기재된 제1저자를 말한다.
 - ②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수정 책임자로서,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임이 명시된 자를 말한다.
 - ③ 논문 등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 ·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판정한다.

3. 그 밖의 사항

- 가, 각 영역별 우대가산점은 각 영역별 만점에 관계 없이 가산한다.
- 나. 업적평가에 있어서 모든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계산하다.
- 다. 평가단위별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인정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평가등급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총점수의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확인하여 판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동점자에 대해서는 본교 근무경력 상위자 순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3] (삭제 2021. 12. 30.)

[별표 3-1] (개정 2013. 4. 19, 2013. 10. 31., 2014. 7. 7., 2016. 7. 5., 2017. 11. 1., 2018. 2. 22., 2020. 12. 30., 2021. 12. 30., 2022. 11. 15., 2023. 5. 10.) <2017년(2016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표

1. 교육업적평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	기준	점수	비고
			책임학점	이상	7	
	책임학점 달성	7	책임학전	리 미만	5-ⓑ	⑤는 미달시수, 평가대상기간(1년)을 기준 으로 평가(단, 보직교수는 평가대상기간 만을 기준으로 함)
	강의계획서 수강신청 전 홈페이지 게재	10	(게재교과목/두 ×1		10	·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기간 7일 전까지 게재 시 인정 · 수강신청 후 배정되는 강의(합폐강 강 좌 포함)는 최초 강의계획서 입력일을 기준으로 평가 다만, 학생 수요에 따라 수강신청 또는 개강일 이후 신설되는 강좌 등은 담당교 과목수에서 제외
	강의개선보고서	5	2과목 *단, 1개 강의 경우에는	를 개설한	5	· 학부, 대학원 과목 포함, 모든 교과목 (논문연구 제외)에 적용 · 분반이 다른 동일 교과목(이하 "분반 · 강의")은 1과목으로 간주.
	제출 교과목수		1과·		3	하기 (도 1 자 그 포 건 1) 다만, 해당 학기에 동일 교과목의 분반 강의만을 개설한 경우에는 각각의 분반 강의를 별개의 교과목으로 간주
	강의 질 개선 노력		교수법	연 2회 이상	3	교육혁신처(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
강의 및			프로그램 참여	연 1회	1	연구센터) 주관 관련 프로그램 참여
장의평가 (80)		3	영어강의 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	1회	3	1회 15시간 프로그램
			강의개선 크리닉	크리닉 1외 1 ※		Micro Teaching ※ 강의촬영 및 분석(50분) 1회
				전체공개	5	KOCW에 공개한 강의동영상만 인정 ·전체공개의 경우 공개시점부터 3년 동
	 강의동영상 공개	5	KOCW ^{₹1)}	10주~14주	3	· 전세공개의 경구 공개시점구의 3년 중 - 안 점수 부여
		-		4~9주	2	· 1차시(30분) x 15주 기준(전체공개)
				1~3주	1	· 일부공개의 경우 해당기간만 점수 부여
	강의평가	50	(합계점수/	'총점)*50	50	성적 C0이하 학생의 강의평가 제외
	강의결손		결손강의시	간×(-1점)		다만, 주당 2시간을 1학점으로 산정하는 특수 강의=결손강의시간×(-0.5점)
	휴·보강 관리		휴강계획서 미준수 (건			휴강계획서 제출기한은 휴강 당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을 경 과하여 사후(휴강일로부터 7일 이내) 학 장 승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는 제외
			보강결과보고/ 미준수 (건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보강일로부 터 7일
	성적평가 및 보조전표 등재		기한 초과 교회	사목수×(-1점)		성적처리(평가, 보조전표 등재) 기한을 초 과한 교과목 수 * 감점은 최대 -3점을 부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 2	2명이상 배출	5	
	석·박사 논문지도	5		1명 배출	4	교양대학, 국제교류처 소속교원의 점수는 소속계열의 평균 점수 적용
	는 문제조			0	3	조득계실의 정권 삼구 작동
				15횟수 이상	5	
	학생상담실적	5		11-14횟수	3	취·창업 관련 상담 포함
학생				10횟수 미만	1	
지도	원제스제계기	5		수상실적	횟수당+1	취·창업 관련 수상 포함(최대 3회)
(20)	학생수상실적	٥	학식	생행사참여 실적	횟수당+1	학과/단과대학 행사 참여(최대 2회)
		5		60% 초과	5	
	취업지도실적		학과	50%~60%미만	4	교양대학, 국제교류처, 산학협력단 및 학
			취업률	40%~50%미만	3	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대상기간 중 졸업생이 없는 학과의 소속교원 점수는
			주2)	30%~40%미만	2	소속계열의 평균 점수 적용
				30% 미만	1	
	K-MOOC ^{₹3)}	4	1 7	· 당좌 (13주 이상)	4	공개 시점부터 3년 동안 점수 부여
가산 우대점 ^{주4)} (4)	점 ^{주4)} 교수법 ₄ 1과모		2	PBL, Flipped learning, Action learning 등 토론식 강의수업 운영사례 주관부서 발표 * 주관부서: 교수학습개발센터		
(1)		147				* 주관부서: 교수학습개발센터 ※ 2018년(2017년 실적) 평가부터 적

주1) KOCW(Korea Open CourseWar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주2) 학과취업률은 평가대상기간 정보공시 순수취업률 평균반영

주3)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

주4) 가산우대점은 평가항목 중 1개만 인정

2. 연구업적평가표

(1-생산공학, 2-정보통신, 3-건축건설, 4화공화학, 5-물리수학스포츠, 6-설계디자인, 7-조형예술, 8-인문사회창작, 9-경영행정, 10-소프트웨어)

2.1. 학술연구영역

	평가항목				3	4	5	6	7	8	9	10	비고		
	국제전문 학술지	A&HCI, SSCI 저널						550			- 저널영향지수(IF) ^{주1)} 에 따른 가중치 ^{주4)} 각 계열별 상위 ~ 10% (Q1) ^{주2)} = 점수 × 1.8 각 계열별 상위 ~ 30% (Q2) = 점수 × 1.5				
		SCI(E)급 저널						400				각 계열별 상위 ~ 50% (Q3) = 점수 × 1.2 각 계열별 상위 ~ 70% (Q4) = 점수 × 1 각 계열별 ~ 100% (기타) = 점수 × 0.8			
논문		SCOPUS 저널						200			SCOPUS 정규논문 Document type(4종)만 인정 6계열 ^{주3)} 에 기재된 학술지 포함				
T. L.	국제일반학술지]		150									논문(학술)지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50				20	00	150	- 8, 9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0점		
	한국연구재단				100				13	50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50점			
	기타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50												
	전문잡지에의 비평, 논평, 서						20	20	20			8계열 : 전문학술지는 등재후보지 이상, 전문잡지 는 ISBN, ISSN 등이 부여된 잡지			

- 주1) SCI(A&HCI 포함) 저널별 IF 랭킹은 JCR on the web에서 제공하는 Journal ranking 자료를 사용하며, 해당 카테고리 중 가장 유리한 값을 제시할 수 있다. * 게재연도의 IF값으로 산정. 게재연도의 IF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자료로 평가
- 주2) A&HCT급 저널 IF 랭킹 값이 없는 경우는 SJR 사이트(http://www.scimagojr.com/journalrank.php) 랭킹 등급(Q1~Q4)으로 평가 ※ 랭킹등급이 없는 경우 기타로 평가 주3) 건축 분야 국제전문학술지: 일본건축학회논문집, 일본건축사학회논문집, 대만건축학회지, 성가폴건축학회지, 중국건축학회보, 홍콩건축학회지, 필리핀건축학회지
- 이때 「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별 인정IF(1~4)와 논문 형태별 인정IF 적용기준*에 따라 'IF'를 산출하고, 산출 된 IF를 발표 논문의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JCR category에 적용하여 JCR 구간을 정한다.
 - * 인정IF 적용기준 : Regular 논문의 경우 인정IF를 그대로 부여(워크숍, 포스터는 IF 미부여), Short 논문은 IF 1점 차감, Spotlight 논문은 IF 2점 차감

평가항목				2	3	3	4	5	6	7		8	9	10	비고		
	구계				200				300	Α	500	450	200				
	국제전문학술저서		B 450 450 20								200						
	국내	국내전문학술저서				150				200	A	350	300	150			
	(1,2,3,4,5,6,7계열 고교	! 1종 도서 및 대학교재 포함)				130				200	В	300	300	130	4 topy () 63-0 3-0 13-0 Al-2		
		국제									A	275	225		1.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 2. 8계열의 경우 아래 적용		
	대학교재	크게									В	225	223		- A=우수, B=보통		
	(초중고 교과서 포함)	국내									A	200	150		- 대학교재에는 초중고 교과서도 포함		
		7 "									В	150	100		- 편저는 서문과 본문의 한 챕터 이상 직접 쓴 경우만 인정		
저서	전등	근분야번역서				100)			150	A	275	225	100	적접 는 경구단 인정 - 저서개정판의 경우, 새로 A나 B		
											В	225			등급을 매긴 다음 新著의 1/5에		
	국외편저			100						120	A	200	150	100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국내편저										В	150					
						70				100	A B	150	100	70			
											ь	100	新著				
	저서개정	판(1/5 이상 개정)	30 30					新礼	全 1/5	1/5	30						
	사	전(단독제작)		80								8, 9계열: 사전, 연표, 지도의 공동제작도 포함					
	주4	석판, 교열판	70														
	국제학술회	회의 발표 및 논문							5	0							
학술 회의	국제학술회	회의 발표 및 초록							2	5					상한선 총 150점(CD집 포함)		
외의 발표	국내학술회							2	5					※ 논문실적과 학술회의 발표 실적, 중복 인정 불가			
	국내학술회의 발표 및 초록									0							
연구	국제 학·예술단체에	100					- 100										
창작 관련	' 구대 하.예수다체에서이 수사(ᄎ혀 선계 제인)			70 - 70							수상 년도별 동일 학회 수상 횟수 3회까지만 인정						
수상	교내 우수연구 및	! 교육 우수 교수상 수상							3	0							

			평가항목		6	비고						
		설계 작품으로 공인	l된 국제적 권위의 입	적으로 평가된 작품	500							
	l	설계 작품으로 국니 심사과정을 거쳐 수	, .	세, 사단법인으로부터	300	- 공인된 국제적 권위의 업적은 설계작품으로 "공인된 국제적 권위의 수상작", "공인 된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A&HCI에 등재된 국제저명 저널에 자세히 게재된 작						
		공인된 국제설계경	기 당선작품		300	│ 품″으로 한다. │- 동일 작품이 1개 이상의 항목에서 평가될 경우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공인된 국제설계경	기 입상작품		200	- 동일한 작품을 건축계획안으로 평가받은 뒤, 시공된 작품으로 추가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작품의 최고점수와 계획안 최고점수의 차이를 추가로 부여한다.						
	설계	공인된 국내설계경	기 및 공모전 당선적	·품	200	- 저널이란 국내외의 건축, 도시, 조경 및 디자인 전문지 및 출판물 등록을 필한 전 문자지 및 작품집을 뜻한다.						
		공인된 국내설계경	기 및 공모전 입상적	남	150	- 설계사무소와 공동작품인 경우 참여한 설계사무소당 저자 수는 1명으로 한다.						
		국제 단체전시회			150	설계작품의 모든 실적에 있어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참가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 당 점수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출한다.						
		국내 단체전시회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학생이 참여할 때는 작가 수 제외						
		건축설계 작품으로	국제 저널에 게재된	· 작품	300	- 국제단체전시회 및 국내단체전시회 평가항목의 경우, 합하여 최대 8회/년까지 인 정하다.						
창작		건축설계 작품으로 국내 저널에 게재된 작품										
			대형	책임	350	- 정부기관, 세계 100대 기업의 본사와 계약(1억원 이상)						
			프로젝트	공동	150	- '8무기단, 세계 100대 기업의 단시와 세탁(1학전 학생)						
			중형	책임	200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또는 대기업, 단체와의 계약(5,000만원~1억원 미만)						
		디자인	프로젝트	공동	100	- 8 기가 자 못 한에게한 또한 테기밥, 한제러의 제미(5,000한편 1학한 학판)						
	설계 (도시	창작	일반	책임	100	-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산하기관 또는 중소기업, 단체와의 계약						
	(조^) 계획		프로젝트	공동	5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및 설계)		소형 프로젝트	책임	50	상동(1000만원~3000만원 미만)						
		- 디자인창작 결과 - 기관과 계약액 - 산학협력 단장	명의로 체결된 실적여	∥획)보고서 제출 = 경우 낮은 것을 기								

		평7	가항목	6	7	비고				
			최고급	350	500	- 국제 대형 기획 초대 개인전 - 대형 미술관 초대 개인전				
		개인전	고급	250	350	- 국제 디자인, 아트페어 및 산업전시회 개인전 (1부스, 1화랑(기업), 1인전) - 국내외 중형 미술관 초대 개인전 - 국내외 정부기관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시관에 초대된 개인전				
			일반	200	300	- 국내외 갤러리 및 전시 전용공간	연 1회 인정			
	2인전				0	- 국내외 갤러리 및 전시 전용공간				
창작	조형, 설계	rl.제 zi	국제	150	130	- 국외 아트페어, 디자인페어, 공예페어, 산업전시회 - 국외 대형 미술관 및 갤러리 - 국외 국공립 미술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이 주관하는 전시 - 국제전시 - 사단법인 협회전(국외) - 국외 미술관 및 갤러리 기획 초대전시	여 8일 이것			
	(전시)	단체전	국내	100	130	- 국내 아트페어, 디자인페어, 공예페어, 산업전시회 - 국내 대형 미술관 및 갤러리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이 주관하는 전시 - 사단법인 협회전(국내) - 국내 미술관 및 갤러리 기획 초대전시 - 각종 협회전 및 기타 일반 전시회(6계열 제외)	연 8회 인정			
		수상	최고상	20	0	국제공모전, 국내외 미술상, 공예상, 디자인상(1인상)				
		7%	특선 이상	80	100	국제공모전, 국내외 미술상, 공예상, 디자인상(5인 이하 공동상)				
	- 개인전 이상의 전시는 도록 및 관련자료 홈페이지 또는 저널에서 출력 제출하며 단체전은 팸플릿만 제출 - 산업전시에 참여시 주관업체 또는 기업체 발행 참여 확인서 또는 성명이 수록된 도록 제출 - 단체전에 공동 출품할 경우는 1/N(작가 수)하여 최종점수 산출. 단 학생이 참여할 때는 작가 수에서 제외 - 수상은 상장 사본 또는 주관기관 확인서 제출									

				평가항목		6	7	비고
				최고급 (S급) 전시기획	총감독 (큐레이터)	200	500	- 국내외 대형기획전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국내외 대형미술관,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전시기획	대형전시	고급 (A급) 전시기획	큐레이터	150	350	- 국내외 국가등록 중대형 미술관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 국내외 정부기관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시관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 국제 아트페어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일반전시	중요 전시기획	큐레이터	100	300	- 국내외 중대형 갤러리 및 국가등록 전시공간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클립선 시	기타 전시기획	큐레이터	50	100	- 기타 국내외 갤러리 및 전시공간 기획전 책임큐레이터
	조형, 설계	- 기획자의	성명이 수록된	심의에 의해 이루어짐 : 도록 및 주관기관 확인서 분야(미술이론, 디자인이론,		한함		
창작	(전시			최고급 디자인	책임	350	450	정부기관, 세계 100대 기업의 본사와 계약(1억원 이상)
	&			시작년 창작	공동	150	150	(8구기년, 세계 100대 기립의 근사와 제탁(1탁편 약명)
	디자인 창작)	-1-1-1		고급 디자인	책임	200	250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또는 대기업, 단체와의 계약
		디자인 창작		하작 ************************************	공동	100	100	(5,000만원~1억원 미만)
				일반 디자인	책임	100	150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산하기관 또는 중소기업,
				다시 교 창작	공동	50	80	단체와의 계약(3,000만원~5,000만원 미만)
			소	형 디자인 창작	책임	50	80	상동(1000만원~3000만원 미만)
		디자인창조기관과 계산학협력	나 결과물 제출 약액 중 하나 단장 명의로 <i>></i>	발행하는 참여 확인서 제· · 간 만족시키는 경우 낮은 것 세결된 실적에 한함 을 피하고자 유리한 분야로	l을 기준으로 내려 평			

			평가항목		8	비고
		① 국외에서 단행본	L으로 게재된 문 학	· 사작품	250	
		② 국내전문출판사 (소설, 시, 희곡		200		
		③ 산문집		45		
			1,000매 이상		185	
		④ 소설	1,000매 이하(A	급)	75	
			1,000매 이하(B	급)	50	
		(5) A)	A급		20	
	문학		B급		15	
창작			장막	공연된 경우	150	
		(6) 희곡	76 7	공연 안 된 경우	90	
		0 47	단막(A급)		50	
			단막(B급)		35	
			40매 이상(A급)	25	
		⑦ 평론	40매 이상(B급)		18	
		₩ 3€	10매 이상 40미	에 미만 (A급)	13	
			10매 이상 40미	에 미만 (B급)	9	
			시 전문지 : 현대/	문학, 문학사상, 문학동네, 실천문학 시, 현대시학 3. 소설 전문지 : 학 및 웹진		

2.2. 산학협력영역

(1-생산공학, 2-정보통신, 3-건축건설, 4-화공화학, 5-물리수학스포츠, 6-설계디자인, 7-조형예술, 8-인문사회창작, 9-경영행정, 10-소프트웨어, 11-산학협력중점)

		평가항목		1	2	3	4	5	5 6	7	8	9	10	11	비고	
		국외등록특허			İ			800								
	특허	국내등록특허						100						기원원러리가 되시크 트로리 기카계 최원		
	국에	실용신안 등록 특	투허						50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실적에 한함	
		디자인등록(상표등록	- 제외)		30					5	0					
		기술료(천만원당)							300	1					10만원당 3점 (VAT 제외한 산학협력단 입금액 기준)	
산학 협력		산학협력 캡스톤디자						30						학생 1명 지도 시 2점, 상한 30점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계약학과 운영 책임(채	360						1				평가대상기간 내에 종료된 학기마다 60점 상한 360점			
	산학 교육	계약학과 운영 책임(지		180										평가대상기간 내에 종료된 학기마다 30점 상한 180점		
		현장실습 및 인턴십	200								기관(기업)-학생 1명 매칭시 4점, 최대 50명까지 인정					
		산학협력 기술지도 및	200									1건당 10점, 최대 20건까지 인정				
			정부 및 기타				50							10만원당 0.5~1점 * 산학협력단에 간접비를 납부한 과제이		
	2외 구비	연구과제(천만원당)*	연구과제(천만원당)* 기업체			100								거나 산학협력단에서 협약한 과제(현물 제외) 인정환산율		
1 2	1 ₽1	정부재정사업 수행(1	억원당)						40						적용 1억원 이상만 인정 *100만원당 1점,수주 후 공분으로 등록 된 실적만 인정	
		정부재정사업 수주 기억	(1억원당)*											100		

	평가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비고	
	칭	창업 1건당 250점 1건당 1,000점*												창업지원단에서 교원창업 승인을 받고 평가대 상기간 내 설립 완료된 창업기업 *교원창업규정에 의거 보유주식의 5%를 산학 협력단에 무상기부한 창업기업에 한함	
		매출액					5천민	선만원당 20점						상한 300점 업적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창업 시점부터 5년 내 기업)	<1~10계열> 500점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실적의 2분의 1을 인정 (예) 1,500점 달성 → 1,000점 인정
7.0	성과	졸업생 고용					1명	당 10)0점					본교 졸업 이후 3년 이내, 학부/대학원 졸업 모두 인정 - 동일인 1회만 인정 (정규직, 계약직 및 단기인턴 포함)	: 500점 + 1,000점 × 1/2 = 1,000 점 <11계열> 인정 제한 기준 없음 (예) 1,500점 달성 → 1,500점 인정
교원 창업		투자 발표회 500			창업기업 투자발표회(IR) 발표 1회당 25점(총 4회) 상한 100점 - 투자유치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 100점 - 투자유치 5천만원 ~1억원 이내 200점 - 튜자유치 1억원 ~ 2억원 이내 300점 - 투자유치 2억원 이상 400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53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예비벤처기업은 제외) - 공동사업자등록: 1/n (n은 등록원에 명시된 총 인원) - 창업 및 매출액 항목은 1개 기업당									
	지원	창업 지도						200						지도하여 창업을 한 실적 건당 100점 상한 200점 - 공동지도의 경우 1/n(n은 교원 수)에 비례 하여 인정	1회 신청 인정
	활동	박람회						100						창업기업 박람회(전시회) 참가 1건당 50점 상한 100점 - 창업기업 및 학교 명의로 참가 시 인정	

3. 봉사업적평가표

	평가항	목	배점		비고	
	구제 하.예수다체히자	편집위원장, 국제공모전	A&HCI, SCI,SSCI,S CIE	40	임기제이며 위촉장 또는 임명과 관련된 e-mail 내용 제출 시 인 정,	
	심사위원장	E H 11 E 07 11 10 - 12 E	SCOPUS 35		국제공모전의 경우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3개 지역 중 10개국이상(지역별 1개국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1회 인정)	
	국제 학·예술단체인원.	편집위원, 국제공모전 심	A&HCI, SCI,SSCI,S CIE	20	임기제이며 위촉장 또는 임명과 관련된 e-mail 내용 제출 시 인 정,	
	사위원, 국제학술대회 대		SCOPUS	15	국제공모전의 경우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3개 지역 중 10개국이상(지역별 1개국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1회 인정)	
	국내 학·예술단체 회장,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보유시	35		م الما الما	
	편집위원장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지 보유시	25		1회 인정 -	
교외	국내, 국제 학·예술단 인증평가위원장	체 임원, 편집위원, 공학	15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 내, 국제학·예술단체 회장, 편집위 원당 포함(1회 인정)	
봉사			3		15점 상한점 (학회 논문심사 2회만 인정)	
점수 의 30%		사)위원, 출제/채점 위원 각종인증심사위원, 학회	10		30점 상한점 정부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 증평가* 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활동 실적 중 다음의 주요 사업에 한 하여 인정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학기 관평가인증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 학협력(LINC+), 연구지원(BK21+)	
	외부초청세미나, 방송출 지 원고게재	·연, 칼럼게재, 각종학술	3		단, 방송사회자의 경우, 건수당 5 점, 15점 상한점	
	기타 단체 및 기관 디지		3		15점 상한점	
	국제단체,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의 수상	15		1회 한정 인정, 장관급 이상	
	국제 및 국내 학술단체		5		1회 한정 인정 (학술상 등 공로상 성격의 수상)	
	정부 및 부	공공기관 주관 재능기	시간당 :	2점	20점 상한점	
	※ (예)	체 재능기부 자율학기제 무료강좌 또는 교육원 무료강좌 개설	시간당	1점	20점 상한점 (재능기부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평기	·항목	배경	점	비고	
	교육부총장, 연구기획 평의회 의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교수	70)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인정, 보직	
	확대교무위원, 교수평	의회 부의장	60)	재임기간 및 만료 후 1년간 적용	
	특수·전문대학원장		45	5		
	학과장·학부장, 통합학 무처장, 분과위원장	과 주임교수, 교수평의회 사	30)	1회 인정	
		공학인증 PD, 기업지원센터 장, 디자인협력센터장, 지역	10)	1회 인정 *단, 비교과과정 주임교수는 5점	
	기초·교양교과 책임:	교수	5		1회 인정	
		사업단장	45	5		
	혁신공유대학사업	부단장, 부장교수	5		1 전 이 건	
	역신중규내의사업	책임교수	3		·1회 인정	
		참여교수	2			
		산학협력 전담교수	2		2회 인정(학기당 1회)	
	산학연협력대학선도대	H학 특화산업 기업협업센터장	5			
	육성사업	재직자 교육(유료)	2		3회 인정	
교내		재직자 교육(무료)	1		3회 인정	
봉사	공학혁신센터 전담교 집필위원	수, 공학인증자체평가보고서	3		1회 인정	
점수 의 70%	전체교수회의 참석		10		(참여횟수/전체회의횟수)×10 ※ 공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된 위임장만 인정	
	정부재정지원사업 기	[한	A B C	10 8 6	사업 책임자가 참여자의 기여율 에 따라 점수 결정	
	학생단체(동아리*) 지.	도교수	5		1회 인정 *취·창업 및 학과동아리 포함	
		학교차원	3			
	(회의 출석률 50%	단과대학 차원	2		4회 인정	
	이상인 경우만 인 정)	교수평의회 평의원	3		1회 인정	
	, and the second	각종 기획·정책연구 책임	15	5		
	l간속 기외·성재역구L	각종 기획·정책연구 위원, T/F위원	8		30점 상한	
	입학고사(모의)출제위 면접위원, 논술고사감	원 및 채점위원, 서류평가 및 독	3		3회 인정	
	산학협의회 책임교수		2		1회 인정	
	공동실험실 책임교수		2		1회 인정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2회 인정(학기당 1회)	
가산 우대 점	발전기금 또는 장학금	· 유치	1점/10	0만원		

[별표 4] (신설 2017. 11. 1., 개정 2018. 2. 22., 2021. 10. 1., 2021. 12. 30., 2022. 11. 15.)

성과연봉 최하위C등급 기준

영역별											
) 매 학년도 학칙 상 책임시수 미달(1시간 이상) 교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4조 :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 합강·폐강 등으로 인호	한 시수 인정 기준									
	- 1학기 미달 책임 시	수는 2학기에 초과 강의하는 경우 인정하며, 2학기 미달 책임시수는									
	다음 학년도 1학기 🤄	초과 강의 시 책임시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발령유형에 따른 책임	기사수 적용 기준									
	발령유형	책임시수 적용 기준									
교 육	신임교원 (1년 미만자)	임용 후 최초 업적평가 시 책임시수 기준 적용 유예									
JE 24	전임총장	총장 퇴임일이 속한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책임시수 기준 적용 유예									
	보직교원 및 감면시수가 있는 교원	책임시수에서 감면시수를 제외한 시수로 책임시수 산정									
	연구년교원										
	(6개월 이상)	페리 바랍리카의 테디워도 윌리 EA 웨이지스 리즈 카이 이제									
	출산휴가(병가)자	─ 해당 발령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 책임시수 기준 적용 유예									
	파견자, 휴직자	_ 1. 경기자는 1개월 약경 전단시 제골 시 단경 									
	(육아휴직 포함)										
	기타	그 밖의 발령유형에 따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개별 심의 후 결정									
	저자] , ISBN을 부여턴 - 신임교원은 임용 3년 - 전임총장은 재임용 3	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논문 [제1(교신) 날은 자·역서(교과서)(단독 또는 제1저자) 가운데 어느 1편도 없는 교원 차 평가부터 적용함 후 3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대적으로 논문(자·역서) 편수가 적은 계열에 대한 기준									
	계열	연구영역 C등급 기준									
연 구	조형예술계열	최근 3년간 전시회(디자인창작 포함) 4회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전시 기획(디자인창작 포함) 2회 미만인 경우									
	설계디자인계열	최근 3년간 전시회 4회 미만인 경우									
	인문사회창작계열	최근 3년간 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1편에 해당하는 점수의 창작 실적이 없는 경우									
		정국 보고 시하는 3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표3-1]의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이 3,000만원 이상 [별표3-1]의 기술료(기술이전)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창업교원이 본교 산학협력단과 민간과제 체결 실적이 6,000만원 이상									
	○ 해당 연도 성과연봉										
	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판정)										
	경우										
윤 리	_ ,	성과연봉 지급 해당 연도 1회에 한하여 미지급									
		정(판정)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 교원에 대한 당초 처분									
		절차를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 지급된 연도의 성과연봉기									
	준액을 소급하여	준액을 소급하여 지급									

영역별	세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영 제39조 제4항)
	※ 해당 인원은 성과연봉 평가대상 현원에 포함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음.
	*징계 감경이 불가한 징계사유로서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학교폭력, 인사, 공직선
	거법, 재산등록 및 주식매매·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소극행정, 부정청탁 등이 해당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2. 30.)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업적 평가계열 조정 신청서>

	성	명	소속 학과(부)	직	위	연	교 내	
ł						락	핸드폰	
l						처	이메일	

평가계열	현행	변경	비고(채용분야*)
조정내역			

변경신청사유

위와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 업적 평가 계열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 채용분야 : 최초 임용 당시 채용분야(공고문 기준)

최근 3년 간 연구논문 실적표

기간: 20 . 1. ~ 20 . 12. (3년)

번호	년월	제목	학회지명	계열

※ 연구논문 외 다른 형태의 연구실적을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